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. 사행기구의 제조·수입 또는 양도·양수증명서 1부(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1.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: 100,000원 2. 그 밖의 사행행위업: 5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등본	

처리절차

